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내용 명시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48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내용 명시	3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21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기관을 통하여 ‘취업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을 돕고 있음.

하지만, 상당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 취업교육 내용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료보건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근로자 인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내용 명시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재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의 내용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의료보건서비스 및 인권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② (생략) <u><신설></u>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1. <u>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u> 2. <u>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u> 3. <u>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u> 4. 「 <u>근로기준법</u> 」, 「 <u>출입국관리법</u> 」 등 관련 법령에 따른 <u>외국인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u>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u>시간과 내용</u>,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u>사항</u> 5. <u>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의료보건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u> 6. <u>외국인근로자 인권에 관한 사항</u> 7. <u>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u> 8. <u>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 취업교육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④ -----<u>시간 및</u>----- ----- -----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각각 입국한 후 일정 기간 내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음.¹⁾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등) ①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1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된 교육내용과사회복지·의료보건서비스 및 인권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복지나 의료보건 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그들의 인권 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현행 법률에 명시된 취업교육의 목적이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는 것이고, 법령으로 비용부담의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상황에서²⁾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정된 시간을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안전한 근로에 필수적인 과목들로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법률로 취업교육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실질적으

②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영 제1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취업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인 취업교육 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과정 시간 기준]

업종	취업교육기관	취업교육비
제조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중소기업중앙회, 노사발전재단, 한국생산성본부	234,000원
농업, 축산업	농협	260,000원
어업	수협	258,000원
건설업	대한건설협회	280,000원

로 취업교육을 내실화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외국인 취업교육 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과정 시간 기준³⁾]

과 목	주요 교육내용	교육시간
한국의 직장문화	직장생활, 직장예절 및 기숙사 생활 등	1시간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및 기초생활법률	5시간
고충상담절차 등	고충처리 및 상담절차(기관 안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모성보호 교육	3시간
산업안전보건	안전표지, 안전일반 및 작업안전(업종별)	5시간
기초기능	업종별 기초기능	2시간

고용노동부는 사회복지·의료보건 사항은 취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음을 고려할 때 현재도 취업교육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이와 관련한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화성 아리셀 사고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2024년 8월), 소방대피훈련 등 재해·재난 안전교육을 포함하고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5시간으로 의무화 한 사례와 같이 사회적 요구에 따라 탄력적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3]

문 의 처
02)6788-5545